

● 중소기업부공고제2026-274호

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1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21294호, 2025.12.30. 공포, 2026.7.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상 빈 점포의 기준 규정(안 제12조의2)

나. 빈 점포 활용 용도를 위한 장소 규정(안 제12조의3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(어진동)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
- 전자우편 : khjkr@korea.kr
- 팩스 : 044-204-788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(전화 (044) 204 - 7886, 팩스 044-204-788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